

# 충청북도도.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(안)

의안번호	108
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1996. . .

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## □ 제안이유

- 도.소매업진흥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 및 지방도.소매업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정비하고,
-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으로 지방심의위원회 위원 및 간사의 직명 변경

## □ 주요골자

- 도.소매업진흥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지방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정비
  - 도매센터의 개설허가 심의기능 추가
  - 대규모소매점 개설자에 대한 권고 기능 삭제
-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 및 간사 직명변경
  - 위원장 부지사를 행정부지사로 하고, 농어촌개발국장, 지역경제국장, 건설도시국장을 각각 농정국장, 공업경제국장, 건설교통국장으로 개정
  - 간사 상정과장을 경제과장으로 개정

## □ 근거법령

- 도.소매업진흥법시행령제25조(지방심의위원회의 조직. 운영등)
-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제2조, 제3조

## 충청북도도·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(안)

충청북도 도·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중 " 제34조 " 를 " 제25조 " 로 한다.

제2조제2호 " 대규모소매점의 개설허가 (매장면적 3천 제곱미터이상제한함) " 를 " 대규모소매점(백화점,쇼핑센터).도매센터의 개설허가 " 로 동조제3호 " 대규모소매점 개설자에 대한 변경권고 " 는 이를 삭제하고, 동조제4호 "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법인의 영업활동에 대한 권고 및 명령 " 은 이를 제3호 " 도.소매업진흥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법인등의 판매활동에 대한 권고 및 명령 " 으로 하고, 동조제5호 " 기타 도.소매업의 진흥과 조정에 관하여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는 사항 " 은 이를 제4호 " 기타 도.소매업의 진흥과 균형발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" 으로 한다.

제3조제2항중 " 부지사 " 를 " 행정부지사 " 로 하고, 동항제1호 " 농어촌개발국장, 지역경제국장, 건설도시국장 " 을 각각 " 농정국장, 공업경제국장, 건설교통국장 " 으로 한다.

제4조제2항중 "지역경제국장 " 을 " 공업경제국장 " 으로 한다.

제9조제2항중 " 상정과장 " 을 " 경제과장 " 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